

교육대학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내규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및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·학습 환경을 제공하고, 대학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“장애”라 함은 교수·학습활동 및 대학원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 기관의 기능 이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.
- ②“장애학생”이라 함은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(장애인 등록증 소지자)된 장애학생 모두를 말한다.
- ③“교육·복지”라 함은 장애학생의 교수·학습 환경의 개선 및 대학원 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장애학생에 대한 배려)

대학원 생활 및 후생복지 지원에 있어서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 이 내규는 교육대학원에서 수학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5조(교수·학습지원) 교수·학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.

1. 수강신청 도우미 제공 등 수강신청 지원
2. 수업지원 도우미 연계 등 학습지원
3.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기자재 지원
4. 기타 장애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

제6조(대학원 생활 지원) 장애학생의 대학원 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.

1. 기숙사, 학과활동 등의 대학원 생활 지원
2. 장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, 개인상담
3. 진로상담 등의 진로지원
4. 기타 대학원 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

제7조 (장애학생지원위원회) ①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는 교육대학원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한다.

- ② 위원회 구성은 교육대학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교육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.
- ③ 위촉위원은 교육대학원 전공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장애학생의 교수·학습에 관한 사항
 2. 장애학생의 생활·복지에 관한 사항
 3.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
 4. 장애학생의 경력 및 진로 개발에 관한 사항
 5. 장애학생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·결정
 6. 기타 장애학생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

제8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위원회 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교육대학원 교학행정실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한다.

제10조(지원요청) ①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는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지원을 교육대학원 교학행정실에 신청할 수 있다.

② 교학행정실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심사청구) ①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는 제10조 제2항에 대한 결정과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」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심사청구를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(별지 1호)를 교학행정실에 제출하며, 교학행정실은 위원회에 심사청구사항에 대한 심사·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하여 심사결과통지서(별지 2호)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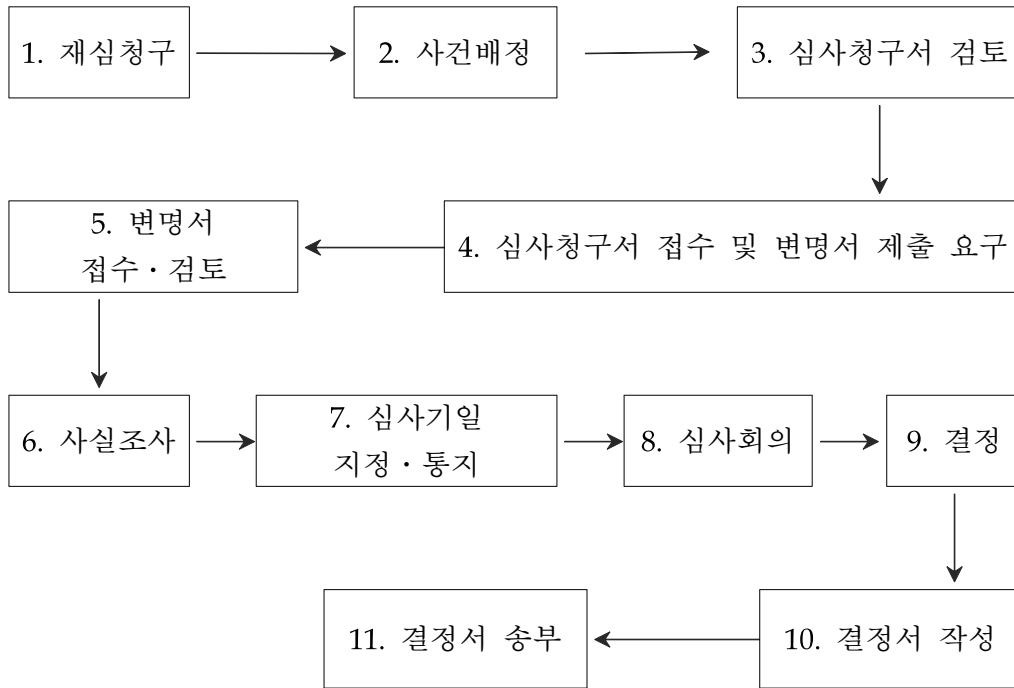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심 사 청 구 서			
① 사 건			
② 청구인	성 명		성 별
	주 소	(전화번호:)	
	소 속		
③ 피 청 구 인			
④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			
⑤ 재심청구의 취지			
⑥ 재심청구의 이유			
⑦ 기타 입증자료			
⑧ 근거 법률	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청구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귀하</p>			

1. 심사청구서 작성요령

- ① 사 건 명: ○○ 처분 취소 청구
 - ② 피청구인: 처분권자를 말함
 -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: 년 월 일자
 ○○ 처분
 - ④ 심사청구의 취지: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
 ○○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
 - ⑤ 심사청구의 이유: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
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
 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
 - ⑥ 기타 입증자료: 본 건과 관련 있는 제반증거 및 참고자료
- ※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
로 제시 가능

2. 심사절차



[별지 2호]

심사결과통지서			
① 사건			
② 청구인	성명		성별
	주소	(전화번호:)	
	소속		
③ 피 청구인			
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			
⑤ 심사 결과			
⑥ 근거 법률	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		
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.			
년 월 일			
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장 (인)			
청구인	귀하		